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33491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홍종갑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동구, 곽소영, 이지연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9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21. 3. 2.경부터 2025. 3. 28.까지 원고에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던 중인 2021. 5.경부터 C(C, 이하 'C'라 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원고 사업장 내 피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가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③ 원고의 E 상무는 2024. 1. 8.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삭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④ 원고는 위 공지 후에도 계속하여 D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원고 사업장 내 피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⑤ 원고는 2024. 8. 14. C와 '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하여 C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D 프로그램 3년 구독형 라이선스 1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⑥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D 프로그램 3년 구독형 라이선스 1개를 구매하고, 2024. 9. 26. 3,190만 원, 2024. 10. 25. 3,190만 원, 합계 6,380만 원(부가가치세 58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이 구매가격은 당시 D 프로그램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은 아니다.

⑦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C로부터 D 프로그램을 구매한 이후에는 구매한 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 4, 6 ~ 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9

피고는 D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원고 사업장 내 피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불필요한 D 프로그램 구매 비용 5,800만 원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또는 피고의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C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480만 원(= 5,800만 원 × 6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저작권법위반행위 및 원고의D 프로그램 구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D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원고 사업장 내 피고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C와 5,800만 원 상당의 D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표자 F의 승인을 받고 D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C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D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D 프로그램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프로그램이 원고에게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9

원고가 피고의 위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 입사한 약 2개월 후부터 불법 복제한 D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C로부터 D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에는 구매한 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가 D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할 당시부터 원고는 'G', 'H' 등의 프로그램 정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갑 제9-3,4,8, 13-1~4, 14-1,2, 23-1, 24-1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H'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D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가 퇴사한 후 원고가 D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퇴사로 D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이거나 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조할 물품을 수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